

1. 6월 20일 한농연 2차 총궐기대회, 한-미 FTA 저지 위한 의지를 총결집

- 한농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천 무효를 분명히 하고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6월 20일(수) 오후 1시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2만의 농민이 참여하는 “한-미 FTA 저지 한농연 2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 특히 6. 20 총궐기대회를 통해 한농연은 질서 있고 평화로운 집회와 각종 퍼포먼스로, 1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공감대를 선도적으로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 아울러 한농연 중앙임원들은 6월 7일(목) 오전 11시 경남 창원시 종합운동장 앞 만남의 광장에서 “한-미 FTA 저지 한농연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개최하고, 3개 팀으로 나눠 전국 순회에 나섰다. 약 2주간의 전국 순회 일정을 마친 한농연 임원들은 오는 6월 18일(월)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해단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의 강력한 의지를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 이번 6. 20 한농연 2차 총궐기대회는 한-미 양국간 FTA 공식 체결 서명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FTA 협상의 원천무효를 분명히 하고 9월 정기국회와 17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국회비준을 적극 저지하기 위한 350만 농민의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美 광우병 쇠고기 검역 전면 보류…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늦춰질지 주목

- 5월 25일 카길사의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가 발견되고 26일 타이슨사 쇠고기의 바코드가 기존과 다른 점에 대해 농림부가 해명을 요청한 결과, 이들 쇠고기가 미국 농무부의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미국 내수용으로 확인됐다.
- 그럼에도 정부는 “인간적 실수이니 수입을 재개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6월 8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절차를 재개하였다. 미국의 한국수출 증명프로그램(EV)의 개선과 명확한 원인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재개가 서둘러 이뤄진 것이다.
-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수입업자와 미국 수의사가 미국 내수용 쇠고기에 의

도적으로 검역증을 발급해 줬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측 EV 감독 프로그램 자체에 근본적으로 허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미국은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는 어디 까지나 ‘참고사항’ 혹은 ‘권고’ 일 뿐이지, 수입위험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청을 이유로 수입을 재개해야 할 의무는 없다.
- 이번 미국산 쇠고기 관련 사건에 대해, 정부는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확고한 안전조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수입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3. 6월 임시국회 당면 농정현안 관련 법안 제개정 시급

- 여야 정치권이 17대 대선을 20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범여권은 정파간 통합 및 후보단일화 문제를 두고 이합집산중이며,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 경선 및 후보자 검증 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한-미 FTA 체결과 국회비준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잘못된 농정 기조를 반성하여 중장기적인 농업 회생방안을 찾아야 할 정치권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때문에 한농연은 뜻을 같이하는 농민단체 및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 당면 농정현안 관련 법안의 제개정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한농연은 입법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에 우선순위를 둬 집중적으로 제개정 작업을 전개하고, 제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법안들은 17대 대선 및 내년 총선을 통해 한농연의 핵심 농정공약 사항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 6월 임시국회 때 제개정해야 할 농업관련 법령 목록과 핵심 내용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법 : 후계농업경영인 농신보 한도를 2억원으로 증액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안 :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조치를 소급 적용
 - 지방세법 : 경마산업 관련 레저세 인하를 통한 축발기금 확충
 - 농업협동조합법 : 조합장 선거규정을 개정(집행유예 종료 후 선거 출마가 가능토록)
 - 쌀소득 등 운영에 관한 법률 : 목표가격 법제화, 소득보전비율 인상 등을 골자
 - 농사용 전기세(청원심사사항) : 농사용 전기세 인하를 위한 법령 개정
 - 전통술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전통술산업 육성을 위한 주세 인하, 지원책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한농연 6월호 “무엇을 할 것인가” 란을 참조)